

의안번호	2202396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4.08.13.
추계번호	24C24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2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제1항)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제2항)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항)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지원,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2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 '23년 대비 '24년에는 센터수를 늘리고(25개→32개, 시·도당 1개 이상), 상주인력을 '23년 131명에서 '24년 18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비상주상담 변호사 인력 1,376명을 운용하고 있음¹⁾
 - 또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 진단(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계획함
 - － 1단계로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단계로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
 - － 치료 및 상담기간은 법령에 따라 병가로 처리하고, 전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 계획
 -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마음선(先)심리상담 지원’²⁾, ‘마음생(生)심리상담지원’³⁾, ‘마음동(同)심리상담지원’ 및 치료비용지원⁴⁾, ‘마음행(行)심리상담지원’⁵⁾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초기 심리상담 및 협력기관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⁶⁾ 등을 실시하고 있음

1)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자료: 교육부)

2)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교원에 대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사업으로 1회 50분의 심리상담 8회가 지원됨

3)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으로 1회 50분의 심리상담 10회가 지원됨

4)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인정 받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으로 1회 50분의 심리상담 20회가 지원되고,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비용 등 치료비용이 지원됨

5) 개인 심리상담(마음先, 마음生, 마음同)지원을 받은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집중 지원으로 추가 심리상담 5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용 5회(각 50만원 이내)가 지원됨

6) 협력기관 이용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로 1인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법의 제안이유 등⁷⁾을 고려할 때 기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지원범위 확대 또는 신규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 정신건강 관련 사업 내에서 지원범위가 확대되거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시행될 수 있으며, 대상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 실시 및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 등이 추가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교육청별로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일률적 예측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라 추가될 사업내용과 예산소요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96호) 제안이유 (...)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하 생략)